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영문으로는 U2BIO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 기계진단 및 수탁사업
2. 메디컬 및 생명공학 관련 컨설팅사업
3. 메디컬 및 생명공학 관련 시약 및 과학기자재 판매 및 수출입업
4. 유전자 검사 관련 부대사업일체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 유전자 검사 및 서비스 수출입업
7. 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건강용품, 화장품 도/소매업
8. 컨설팅 및 교육업
9. 전자상거래업
10. 인터넷 상품/서비스 중개
11. 인터넷컨텐츠 개발, 제공
12. 인터넷부가서비스 개발, 제공
13. 병/의원 지원 서비스업
14. 건강관리서비스업
1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6. 도/소매업
17. 수출입업
18. 의료기기 제조업
19. 의료관련 임상테스트 및 컨설팅업
20. 동물관련 검사서비스업
21. 부동산업
22.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당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연구소, 공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u2bio.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 보통주식 2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1.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발행한 총수의 1/2 이내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1. 당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

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당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8.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

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⑨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⑩ 상법 제 418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한다.
 4.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의 2 (일반공모증자)

1.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①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②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4.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모두를 부여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주)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시장에 상장 이전에는 상속세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가격에 의하고, (주)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시장 상장 이후에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 전 3개월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삭제>

제10조의4(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5(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명의개서 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

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 2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④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⑥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②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 ③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④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⑥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⑦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

1.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하며,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이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이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술

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 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고,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가 된다.

제19조 (의장)

1.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사분의 일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과 이 사 회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7인이하, 감사는 2인이하로 한다.

제25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제21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 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않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30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1.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5조 (업무집행)

1.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계 산

제39조 (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

을 얻어야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42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한도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5.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주식의 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함) 내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제43조 (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법령에 따른다.

제45조 (세칙내규) 본 회사의 업무 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